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·②(생 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9.(생 략) <신 설> ④(생 략)	**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**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9.(현행과 같음) 10. Ae클래스 수익증권 :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④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9.(생 략) <신 설> ②~⑤(생 략)	**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**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9.(현행과 같음) 10. Ae클래스 수익증권 ②~⑤(현행과 같음)
제40조(보수) ①·②(생 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9.(생 략)	**제40조(보수)**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9.(현행과 같음)

<신 설>	10.Ae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5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
제41조(판매수수료) ①(생 략)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A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5 ③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④(생 략) ⑤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	**제41조(판매수수료)** ①(현행과 같음)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A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5 이내 2. Ae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25 이내 ③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④(현행과 같음) ⑤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
<신 설>	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